

청소년 범법자의 특별지위인정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

양 계 민[†] 김 의 철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 범법자의 특별지위 인정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에 대하여 심리학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고찰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형법상 청소년들은 발달이 덜 된 미숙한 존재라는 인식과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이 용이하다는 두 가지 이유로 심각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흉폭화 저연령화 됨에 따라 청소년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해본 결과 법철학적 입장과 심리학의 이론들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미성숙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실제로 성인에 비하여 인지적, 사회적으로 미숙하다는 근거를 일관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환정책 (conversion policy)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역시 일관되게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범법자에 대하여 특별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 수립과정에서 두 입장 모두를 합리적으로 수렴시킬 필요가 있는 문제이며,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좀 더 심도 깊은 다수의 관련 연구들이 심리학계에서 요구되는 문제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주요 논쟁에 대한 저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의 특별지위, 선도정책, 불처벌 원칙

[†] 교신저자 : 양 계 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yangkm68@hanmail.net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이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미성년이라는 특별 지위를 인정하여 성인과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즉, 각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한 아무리 심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성인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거나 성인교도소에 성인과 함께 수감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을 성인범법자와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 때문인데, 첫째는, 청소년들이 성인 범법자들과 비교하여 범죄를 계획할 능력이 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달적 미성숙 단계의 소년이라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이 시간적 조망을 하는데 있어 성인과 같이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진할 능력이 없고, 어떤 현상을 볼 때 동기론적, 원인론적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상 성인범죄보다는 관대하게, 그리고 범죄요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에 알맞은 처분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는 교정 가능성에 대한 고려로, 청소년들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전환 및 교정정책을 적용하여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회의 일원이자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여기는 소년보호주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성인 범죄자들의 재판체계가 주로 범법자들이 행한 사회적으로 위해하거나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적절히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과 달리 청소년의 재판체계는 선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년범죄를 성인범죄와 구별하여 처리하려는 제도는 중·근세 이래 주로 유럽에서 형사책임 연령, 성인과의 분리 구금, 보호관찰제도, 소년 재판소 설치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근세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나라에서 소년법제를 두고있는 데, 한국도 1988년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의 범죄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저연령화, 일반화, 집단화, 흉폭화, 재범화 등의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고, 심각한 청소년 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일반 대중의 분노가 청소년을 개별적인 사법체계 내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논쟁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¹⁾.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1994년 말 클린턴은 청소년 폭력범죄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문제임을 선언하면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두 번 이상 중죄를 저지를 경우, 세 번째는 더 이상 청소년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과 똑같이 취급한다(Three strike and You're out Law)는 선택적 보호주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의 시행은 미국에서 청소년의 법적 지위인정에 대하여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초등학교 아동에 의한 살인, 노인 폭행, 강간 사례가 있었으나 피해자만이 있을 뿐 형법상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죄의 대가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묻혀진

1) Korea Times, 1999년 8월 13일 금요일자 기사: "지난 10월 11일 미국 Georgia주의 윌리엄 슈나이더 소년 범인 판사는 코너스 고등학교 안에서 6명의 동료 학생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T. J. 솔로몬을 성인범과 같이 재판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슈나이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소년이 흉악범을 모방하여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고 사람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점은 사회가 소년의 권리에 앞서 성인범으로 다룰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소년법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의 범죄가 입증될 경우 솔로몬에게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건들에 대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바 있다(SBS, 1월 4일). 이는 한국에서도 이미 청소년의 형법상 특별지위 인정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근래에 청소년이 본질적으로 어른보다 덜 성숙하다는 지배적인 견해는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과 성인의 사고가 의사결정 상황에서 차이가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한 결과(예를 들면, Furby & Beyth Marom, 1992), 10대들도 고지된 동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는 주장이 매우 증가했으며,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행위나 약물 및 알콜 사용,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에서 치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Gittler, Quigley-Rick, & Saks, 1990). 이렇게 청소년의 특별지위 인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의 구별적인 법적대우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정에서 성인법정으로 옮겨지는 근거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다. 어떤 주는 최소연령 규정이 없고, 어떤 주는 연령에 비교했을 때의 범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Sorrentino & Olsen, 1977).²

이렇게 청소년의 발달적 미성숙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는 책임면제 원칙이 현실의 문제와 부

딛히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책임면제 원칙이 심리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고려해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현재 한국에서 청소년 비행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2)소년법의 배경이념에 대한 법철학적 근거와 (3)심리학적 근거, 및 (4)청소년 전환정책의 효과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여론과 심리학적 결과 및 법철학적 이념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비행의 발생 및 처리실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 나라 소년법(범죄 소년과 촉법소년)의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체 소년법 비율의 증가로, 전체 소년법은 1994년 108,342명에서 1998년 161,277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고, 인구비(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죠휘수)도 137.5에서 221.8로 약 1.6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범죄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6.5%에서 6.9%로 증가하였다. 특히 여자 소년범의 경우 1994년 6,717명에서 1998년 16,851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전체 소년범 중 차지하는 비율도 6.25%에서 10.45%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년범의 흉포화 현상으로, 소년 강력범은 1994년 6,101명에서 1998년 6,130명으로 보험세를 유지하였고, 인구비로 보면 7.7%에서 8.4%로 약 1.1% 증가하였다. 셋째, 급속한 저연령화이다. 14-15세 소년의 경우 지난 30년간 강력범은 약 23.6배, 강간범은 11.3배, 폭력범은 16.4배 증가하는 등 14-15세 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범의 저연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대수, 1999).

2) 예를 들면, New York은 살인, 강간, 과실치사 등의 폭력형 중죄를 저지른 14세에서 16세의 청소년들을 성인법정으로 보내고 있는데(Sussman, 1978), 이에 비해 Indiana주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10세 이상의 청소년, 14세 이상 연령의 아동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또는 16세 이상의 아동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법정으로 보내고 있다(Batey, 1979).

표 1. 소년법의 분류

	연령	형벌법령상 저촉행위	형사책임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	저촉행위 함	有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	저촉행위 함	無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	저촉행위 하지 않음	無

소년법상 비행소년은 세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보통 소년범이라 함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동항 제 2호)을 말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정 이탈, 불량교제 등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 동항 제 3호)도 넓은 의미의 소년범으로 취급할 수 있다. 통상 법률학적 의미로 위 세 가지 소년을 합하여 비행소년이라고 칭한다(표 1 참고).

비행소년이 발생했을 경우인 소년사건은 소년 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소년 보호사건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으나, 소년부 심판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도 있다. 보통은 보호관찰, 감화원, 소년원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비해 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로, 일반법원에서 심판하지만 형사처분에서 특별대우를 받는다. 즉 예를 들어 16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죄를 범하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할 수 있고,³ 소

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지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⁴,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⁵. 이 때 범죄소년 개개인에 대한 주변환경, 개성, 심성, 범행유발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지만,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 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⁶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있다. 특히 학생 범죄의 처리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일시적인 잘못으로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부모나 학교당국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기소유예 등의 관용을 베풀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하는 법철학적 근거가 무엇일까?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소년법 제59조(사형, 무기형의 완화). 그러나 살인, 특수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4) 소년법 제60조 1항(부정기형)

5) 소년법 제60조 2항(부정기형)

6) 검사가 수사결과,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의 특별지위에 대한 법철학적 배경

형법상 청소년의 법적 책임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형법에서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 즉 전형적인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성요건이라 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한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전체 법질서 평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책임은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범죄의 성립요건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범죄성립요건의 세 번째 요건인 책임은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적 비난으로, 형법상의 불법은 인간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판단인 반면, 책임은 불법한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된다. 즉, 책임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 기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행위로 나아갔을 때, 그 불법에 대하여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자유롭고 올바르게 적법과 불법을 구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개인적 능력이 책임판단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자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가는 책임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의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범법사실에 대하여 성인과 달리 특별히 취급되어야 하는 법철학적 근거

는 청소년들이 ‘법규범의 명령이나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 능력이나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행위조종능력’이 결여된 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형사사법에서 소년법을 성인법과 분리하여 다르게 취급하려는 소년사법운동은 국가가 비행소년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친사상(國親思想)(Vito, G. F. & Wilson, D. G., 1985; Bernard, T. J., 1992) 및 청소년의 발달적 미성숙 및 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철학 때문이다. 다음에서 소년법원제도의 이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년법원제도의 이념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과하는 작용이며, 소년사법제도란 이러한 소년사법작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각종 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현행 소년법은 제 1조에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소년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을 지향함을 의미한다(이한교, 1987). 따라서 보호처분은 교육적,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비행에 관하여 소년의 책임을 묻는 수단이 아니라 비행에 나타난 소년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처하고 소년의 반사회적인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을 건전하게 사회

에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소년법원제도 이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소년법원제도의 이념

미국에서 소년범죄에 대하여 성인과 다른 조치를 하기 시작한 것은 1899년 7월 1일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부조를 요하거나 방치된 소년 및 비행소년의 처우와 통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년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부터였다. 이러한 법률은 미성년자는 성장과정에 있는 자로서 충분한 보호·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을 교정시킬 수 있다는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비록 살인, 강간, 강도일지라도 범죄라고 하지 않으며, 따라서 형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소년법원, 가정법원에서 취급을 하며, 비록 이들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었다 해도 소년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고 하지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 하지 않는다.

미국의 소년법원제도의 첫번째 이념은 국친사상(parens patriae: 國親思想)이다. 판사가 소년비행을 인정하여 시설수용처분을 받았다 해도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소년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행의 교정 및 보호·치료를 위해 부득이 국가가 사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에 어떤 제한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는 그런 권리, 즉, 국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범죄소년으로 전락하게 하는 불리한 사회적, 개인적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소년을 발견하였을 때에 국가가 개입하여 후견기능(guardianship)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 하에서는 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추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피후견자로서 고아

나 유기된 소년과 같이 보호와 감호와 훈련을 “양친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것과 꼭 같은” 훈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두 번째 이념은 근대 교육사상과 인도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소년은 지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형법상의 책임론으로 성인과 동일시할 수 없고, 범죄원인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소질, 가정사정, 사회환경 등에 지배되어 불량화 되기에는 아직 이므로 청소년의 범죄 행동에 대해 즉각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이 감수성과 변화가능성이 많아 교화 개선의 여지도 크므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광범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요약하자면 비록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과 교정 가능성에 근거하여 교육적 방법을 통한 개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소년법의 이념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유진식, 1982).

한국 소년법원제도의 이념

첫째는 보호주의이다. 소년법의 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행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보호주의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소년은 심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응보의 감정이 희박하고, 또 피영향성이 강하여 형사처분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기 쉽고 소년의 비행은 환경적인 압력에 충동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역성이 풍부하여 비교적 교육가능성이 용이하며 또 소년의 장래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분에 의한 일반 예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을 들어 이러한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법은 이러한 원칙의 적용으로서 벌금이하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 45조, 제 46조, 제 30조).

둘째는 교육주의이다. 소년의 비행은 성행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관관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대상소년에 대한 성행을 치료, 교정하고 그 소년을 둘러싼 반사회적인 환경을 조정, 개선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교육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인격주의다. 소년의 보호대상은 과거의 행위보다 현재의 인격을 중요시하여 소년보호는 구체적으로 소년의 인격에 내재하고 있는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 소년법의 규정상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법 제 1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 (법 제 4조 1항)” 운운한 소년의 개념은 사법의 개별화의 원리에 따른 인격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행정적 기능과 사법적 기능이 작용하는 대상으로서 보호를 요하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넷째는 예방주의다. 소년보호는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장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우범소년과 14세 미만의 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소년의 범죄 또는 누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호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 공히 청소년의 특별지위 인정은 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비행에 빠지기 쉽지만 교정 또한 용이하다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성인의 경우와 구별하

고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철학적 이념에서 밝히고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라는 기본가정이 심리학적으로도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서 청소년의 발달시기적 특성에 대한 심리학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소년의 형사상 책임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들

지난 수세기 동안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미성숙하고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청소년이 원래부터 미성숙하다는 가정은 여러 법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건강과 관련된 절차에서(예를 들면, 수술 동의서) 동의를 할 수 없으며(Gittler, Quigley-Rick, & Saks, 1990), 미성년자와 계약한 것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아동이 행한 불법적인 계약에 대해서 아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Nurcombe & Partlett, 1994).

Lyon(1996)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위법행동이 성숙하게되면 사라지게 되는 정상적인 청소년 발달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전 세계 13개국의 청소년 범죄의 빈도와 정도를 비교한 Junger Tas등의 연구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Junger Tas et al., 1994). Mulvey와 Aber(1988)도 보통 범죄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청소년기 초기에 시작되어서 성인이 되면 끝나게 되는 자연적인 시작과 회복과정을 거치게 됨을 주장하였고, 그와 유사하게 평생동안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집단은 매우 소수이고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에 일시적으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다는 이론(Moffitt, 1993) 역시 연구결과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 받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 특성상 10대 남자 청소년의 범죄행동은 어쩌면 그 나이에는 정상적인 부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eidman, 1984; Moffitt, 1993).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위와 같은 여러 증거들을 들어 청소년의 범법행위가 성인들의 범죄적 책임이 근거하는 자율성이나 자유의지, 합리적인 선택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아직 발달적 미성숙 때문에 또는 발달의 한 과정에 포함된 것이므로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성인보다는 덜 비난받아야 하고 처벌도 덜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Scott & Griss, 1997).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범죄성향이 과연 그 시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전통 심리학적 이론의 입장과 현대 심리학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통적 이론의 입장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가 발달상 과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과도가 되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의 압력 때문인데, 하나는 생리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압력인 내적인 압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나 동료, 교사,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발생하는 외적 압력 때문이다. 때때로 외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것 보다 더 빨리 성숙하기도 하지만 반면, 그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방해하거나 제지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과도기적 과정에 대한 전형적인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신역동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학적 접근이다. 정신역동적 접근은 개인의 심리성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특히

청소년들이 아동기적 행동 및 정서적 관여로부터 성인기로 이행하게 되는 움직임의 배후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학적 요인에 관심을 둔다. 이에 비해 사회학적 접근은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과도기적 변화를 주로 개인의 사회적 상황 탓으로 돌리고 청소년들이 부여받게 되는 역할의 속성, 역할갈등, 사회적 기대의 압력, 다양한 사회적 영향들에 초점을 둔다. 각 이론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역동적 이론

정신역동적 시각에서 청소년은 사춘기적 성숙의 결과로 나타나는 본능이 급증하는 시작점이다. 본능의 갑작스런 증가는 아동기 후기에 이룩해놓은 심리적 균형을 뒤집어엎고 정서적 격변을 유발해서 결국은 성격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상태는 두 가지 다른 요소와 관련이 된다. 하나는 개인의 성적인 각성이다. 성적인 각성이 청소년들을 가족 이외의 적절한 사랑의 대상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유아기 때부터 존재해온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끊어버린다. 이 과정을 해방(disengagement)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본능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소 부적응적인 심리적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전의 발달단계에서 적절했던 행동으로 퇴행하거나 양가감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 양가감정이 청소년들이 보이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면 관계의 측면에서 보이는 정서적 불안정성, 사고와 감정의 모순, 사랑과 증오, 수용과 거부, 어떤 대상에 관여하기도 하고 관여하지 못하기도 하는 모순된 행동 등이 그것이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에게서 반항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 양가감정 때문인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부모가 구식이고 시대에 뒤

떨어진 것 같이 보인다면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끊는 것이 더 쉬워진다.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거부할 수 있으면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잃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양가감정이 있을 때 반항을 함으로써 해방(disengagement)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같은 정신역동적 입장을 지닌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청년기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기에 끝나는 것도 아니며 일생동안 계속 발달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에 와서 이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게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인 변화로,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신체발달이 급격해지고, 성적 성숙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신체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충동들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 심리적 역동면에서 이전 시기까지 비교적 온화하게 유지되어 온 원초아(Id)와 자아(Ego), 그리고 초자아(Superego)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아는 원초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역동을 조절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청년들이 자아정체감 정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요구의 상충이다. 청년기는 아이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으로서의 존재적 특징 때문에 많은 양가적인 상황(ambivalent situation)에서 자신의 위치 및 역할규정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가정에서는 아직 미혼이며, 경제적 독립이 성취되기 이전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에릭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수행이 유보되는 유예기(moratorium)이기에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어떠

한 관심이나 참여를 하지 않도록 보호 또는 경계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이와 체구에 걸맞게 독립적이기를 기대하고 책임있는 처신과 행동이 요구되는 애매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대한 정신역동적 입장의 설명을 보면 청소년의 시기가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리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일정한 위치에 자리잡지 못하는 '유예기'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아동 후기 및 청소년기는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시기이고 이들이 행한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성인과 같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폭력(Glover, 1960)에 대해서, 특히 살인적 공격(Bender & Curran, 1940; Satten et al., 1960; Easson & Steinhilber, 1961)을 외디푸스 콤플렉스에서 기인한 무의식적 죄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거나(McCarthy, 1978), 초기 박탈경험이 폭력의 폭발에 취약한 미발달된 자아(ego)를 형성시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Muler & Looney, 1974).

사회학적 이론

정신분석적 입장이 개인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개인의 외적 요인인 사회화와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화라는 것은 한 개인이 현재 그 사회의 가치, 기준,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준과 가치는 사회의 위치나 역할과 관련이 되는데, 아동기 동안 자신의 위치는 많은 부분 타인에 의해 결정이 되어지지만 사람이 성숙해감에 따라 점점 역할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도 스스로 하게 된다.

사회화와 역할과정이 특히 청소년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청소년기의 특징인 권위주의적인 인물로부터의 독립, 동료집단에 대한 관여,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 등의 특징들이 모두 역할의 변화와 단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점점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대한 스스로의 확신과 지지에 필요하기 때문이며, 셋째로 중요한 환경적 변화의 결과가 관련된다. 학교를 옮기고, 집을 떠나고 직장을 잡는 등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야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역할변화는 청소년 발달의 통합적 특징으로 보인다⁷⁾. 이러한 발달시기적 특징은 청소년에게 많은 잠재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가져다준다. 사회학적 입장 역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미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7) 청소년이 가지는 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역할 갈등이다. 개인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한 청소년은 집에서는 아들인 동시에 여자 친구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역할이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집에서는 착한 아들이 되기를 요구할 것이고 여자친구는 집으로부터 좀더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역할 단절(role discontinuity)로, 한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전이하는 순서가 부족한 경우이다. Ruth Benedict(1938)는 원시사회가 서구 사회보다 책임감, 성적 성숙등의 훈련에서 좀 더 연속성을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역할 단절은 한 단계에서 다음단계로의 확실한 순서과정이 없는 경우, 두 번째 단계의 행동이 앞 단계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운 것 모두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역할 불일치이다. 이것은 개인이 맞지 않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즉, 다른 사람이 특정 지은 역할이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거나 지나치게 유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접근은 청소년의 과도기적 특성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외적 사회적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공통적으로 청소년기를 “문제가 있는 단계”로 본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즉, 청소년은 완전한 성인이 되기 이전의 뭔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숙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법철학적인 배경을 지지해주고 있다.

두 이론에 대한 비판

전통적인 이론들의 그럴듯한 설명과 달리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들은 전통적인 두 이론을 거의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아개념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심각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른들의 가치를 무조건 거부하지도 동료집단의 가치를 더 선호하지도 않는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동료집단의 가치는 자신에게 중요한 어른의 가치와 배치되기보다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Coleman & Hendry, 1990). 또한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동료집단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킨다는 신념을 지지하는 결과도 없었고, 청소년기가 다른 시기보다 정신병 수준이 높다는 증거도 없었다(Coleman, 1992).

이렇듯 이론과 경험적 연구의 불일치 하는 현상에 대하여 Cole(1992)은 첫째로, 정신분석학자와 사회학자 모두 선택적인 소수 집단만을 보았기 때문에, 둘째로, 어떤 청소년들의 행동이(예를 들면, 기물파손, 약물복용, 폭력 등) 성인에게 극히

위험적인데, 그것을 청소년 사회의 일반으로 간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및 견해로 심리학자들은 정말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혼동의 시기인가의 문제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청소년의 인지적 심리·사회적 특성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Greenberg와 Sorensen (1974)과 같은 심리학자는 “스스로 적절히 기능하는 능력, 사회적 응집력에 공헌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적절히 상호 작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법제도와 관련된 성숙을 논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성숙과 관련된 측면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소년이 의사결정에서 미성숙한지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사회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정서적 성숙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Sternberg & Cauffman, 1996). 현재 청소년의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체계에서 고지된 동의모델이 “지식”과 “유능성”과 같은 요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Markus, 1975; Meisel, Roth, & Lidz, 1977; Grisso & Vierling, 1978; Murphy, 1979; Culver, 1982; Wadlington, 1983).

인지적 특성

인지적 입장(예를 들면, Furby & Beyth-Marom,

1992)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위험의 가능성, 잠재적 위험의 심각성, 대안적인 행동의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계산하는데 다른 결정에 도달하는 이유는 계산시 사용되는 변인에 성인과는 다른 비중과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cott et al., 1995).

범죄와 관련된 법률하에서 능력이 있는 성인은 합리적인 행위자인 18세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호와 가치에 따라 나쁜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Bonnie, Coughlin, Jeffries, & Low, 1997). 물론 많은 무능력한 성인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삶의 방식에서 결정적이다. 이성이 없이는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 미성숙과 판단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많은 경우 대법원의 결정은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치를 정당화하는데 있어 발달적 미성숙 개념을 언급한다. 예를 들면, Parham v. J. R(1979)의 판례에서 판사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p. 603)”고 하였고, Bellotti v. Baird(1979)의 판례에서는 “미성년자들은 종종 경험이 부족하고 시야가 좁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선택을 인식하고 피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은 아동의 능력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Thompson v. Oklahoma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청소년은 성인보다 덜 성숙하고 책임감도 적다(p. 833)”고 언급하였지만 1년 뒤 Stanford v. Kentucky (1989)의 판례에서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성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성숙이 이론이나 실제에서 어떻게 정의

되고 사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심리학자들이 성인과 청소년을 비교하여 이 개념을 연구한 적도 거의 없다. 단지 몇몇 심리연구는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성인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인지적 능력이 있는지, 또는 추론 및 이해능력이 있는지, 결정을 평가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심리적 성숙을 연구하여왔다. 청소년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서적 사회적 영향은 다소 무시하였는데, 위험 감수 및 반사회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연령상 차이를 유발하는 인지적 배후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Fischhoff, 1992; Furby & Beyth-Marom, 1992). 청소년들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논리적 능력이 결핍되어있다는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적어도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나 의사결정상황에서의 합리적 계산상 성인과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 주었다(Jacobs-Quadrel, Fischhoff & Davis, 1993). 오히려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게될 위험에 대해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고(Alexander, Kim, Ensminger, Johnson, Smoth, & Dolan, 1990), 위험에 대하여 높이 지각하는 것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otheram-Borus & Koopman, 1990;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a, b, c). 또 다른 한 연구에서는 의료 의사결정 상황에서 고지된 동의의 법적 기준을 가지고 비교연구 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과 15세 이상의 청소년간에 차이가 없었다(Scott et al., 1995). Grisso(1981)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과 범죄성인을 대상으로 법률과 관련된 또는 범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 Miranda⁸ 원칙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평균

지능을 지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Miranda 권리(Grisso, 1981)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5년 Scott, Reppucci 그리고 Woolard는 청소년의 능력과 성숙을 평가하는 판단의 틀로 이해, 추론, 평가 이외의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포함시킨 결과, 동료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동조 및 응종, 위협에 대한 태도 및 위험 지각, 시간적인 조망 등이 청소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einberg와 Cauffman(1996)은 책임, 기질, 조망 등과 관련된 청소년 문헌을 검토한 결과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17세 이상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excen과 Reppucci(1998)의 연구 역시 청소년기는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성인기 후기가 되어야 생물학적인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일련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성인과 다른가에 대하여, 적어도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심리 사회적 특성

청소년기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적 특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논하고 있는 심리학적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책임감(responsibility), 절제(temperance), 그리고 조망(perspectives)이 그것이다.

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권리에 따라,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억류·심문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1)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2) 심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심문전 알려주어야 한다.

8) Miranda rights라고도 하며, 지난 1966년 Miranda v. Arizona 사건에서 판례로 확립된 형사피의자의 권리이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조사하기 전에 묵비

우선 첫째로 책임감의 발달은 다시 세 가지 다른 시각으로부터 논의된다. 하나는 청소년기가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점, 나머지 하나는 자아의 발달과 관련된다. 우선 자율성 및 독립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20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좀 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촉구에 영향을 덜 받으며 어른의 감독이 없어도 책임감 있게 기능 할 수 있지만(Steinberg, 1990), 청소년들은 아직 사회적인 영향에 매우 민감하다고 인식된다.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는 영향을 받는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부모에게서는 종교나 학업계획, 직업 선택, 다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반면, 동료들로부터는 옷을 고르거나 음악에 대한 취향 등 일상적인 일들에서 영향을 받게 되며(Brittain, 1963),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자기-지시적인(self-direction)의 능력이 증가하고(Greenberger, 1982), 부모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Berndt, 1979).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비행에 관여하라는 압력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좀더 쉽게 비행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Brown, 1990), 동료의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과 자기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 실제로 유능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즉, 청소년의 자율성과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간의 관계는 이론적일 뿐이고, 자율성에서 관찰된 연령차가 판단의 성숙에서의 연령차와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의 책임감 발달에 대한 두 번째 시각은 일관된 정체감의 발달을 강조한다. 자신감 있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가 확실한 사람들은 불안수준이 높고 자기인식이 없고 신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판단을 할 것이다. 자신감, 자기인식, 그리고 가치의 명료화는 청소년기 동안 증가한다고 가설화되어있기 때문에 정체감의 발달은 성숙한 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다. Erickson(1968)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를 실험하고 탐색하는 시기인데, 이는 일관된 정체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는 이 시기에는 아직 확고한 정체감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심리적 유예기이다. 그러나 정체감 위기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개인은 좀 더 강한 확신과 통찰을 가지고 의사결정상황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체감을 획득한 것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도덕적 추론, 반영(reflectiveness) 그리고 직업적 성숙도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반면, 아직 유예기 점수 상에 머물렀던 청소년들은 불안점수가 가장 높았고 권위에 대한 갈등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체감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가장 권위적이고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가장 강했으며 자기신뢰성이 가장 낮았으며, 정체감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Gullotta, & Montemayor, 1992; Wallace-Brosious, Serafica, & Osipow, 1994). 이렇게 정체감의 획득이 성숙한 판단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연령에 따른 정체감 획득의 문제가 중요하게 떠올랐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확고한 정체감은 18세 이전에는 확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rcia, 1980). 따라서 Erickson의 이론에 따르면 18세 이전에는 성숙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책임에 대한 세 번째 틀은 자아발달에 대한 정신역동적 이론에 의존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예를 들면, Freud, 1958; Loevinger, 1976; Blos, 1979), 청년기 초기의 발달과제는 개별화된 자아감을 성

립하는 것이다. 즉, 아이 때 가졌던 부모와의 연결이 아닌 자신의 내면화된 가치와 기준을 가진 자아를 성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개별화의 과정은 세 가지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아동기와 청년전기에 자아감은 전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하여 정의되고 따라서 의사결정은 완전히 부모로부터의 인정을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사결정은 유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성숙한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반대로 초기 청년기에 개인은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이 분리는 반대, 반항, 부모에 대한 거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전보다 더 독립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사결정은 반항을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소망에 의해 결정되며, 합리적인 스스로의 판단의 산물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개별화 과정을 통해 작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부모의 감정을 단순히 따라하거나 무조건 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단 건강한 개별감을 발달시키면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부모의 소망에 자유롭게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게 된다. 결정은 부모의 충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신역동에 근거한 자아발달 이론들은 많이 인용되기는 하지만 경험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단의 성숙문제와 관련된 증거의 대부분은 임상사례나 부모의 관찰로부터 오는데, 둘 모두 청소년기를 매우 형편없는 판단의 시기로 표현하고 있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극단적인 반대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화와 의사결정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실증연구는 전무하며 판단의 성숙이 개별화 과정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검증한 연구도 없다.

개별화의 연령차에 대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몇몇 연구는 개인이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 좀더 개별화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기는 하다(예를 들면, Steinberg & Silverstein, 1986). 그러나 개별화과정은 청소년 중기까지 이루어진다는 이론과는 반대로 이 연구들은 청소년기 전 시기에 걸쳐서 정서적 자율성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화와 판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의 추이를 해석할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 초기 청소년기의 개별화는 판단의 미숙성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후기 청소년기의 개별화는 성숙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자아 성숙도의 특징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아발달을 이룬 사람이 더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발달에 대한 측정치는 사회적·도덕적 추론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령과 자아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기 초기와 중기(12세에서 16세)에 예상 가능한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17세에서 25세)에는 아무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 자아발달이 덜 된 청소년,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적절한 사회적,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특성의 두 번째 차원은 절제로, 청소년들은 위험에 대한 지각 및 태도에서 성인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위험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고(Furby & Beyth-Marom, 1990), 이득의 기회보다 잠재적으로 손실이나 해를 입을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덜 초점을 두고, 어른들이 지각하는 위험을 지각하지 못하고 위험의 가능성이나 크기를 다르게 계산하는 것 같다고 본다(Arnett, 1992). 또

한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약물을 복용하거나, 위험한 번지점프나 범죄행동을 성인보다 더 즐기는 형상들을 위험에 대한 지각의 부족 때문에 또는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본다(Steinberg & Cauffman, 1996). 그러나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취하는 행동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Alexander, Kim, Ensminger, Johnson, Smith, & Dolan, 1990). 단지 성인과 달리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동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신의 행위의 장기적 결과를 잘 고려하지 못하고, 좀 더 충동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잘 고려하지 못하며, 의사결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성인과 다르게 산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험한 행동과 관계되는 것이 청소년기의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경향성으로, 감각추구란 강렬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Zuckerman, 1979).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동조적 행동에 좀 더 지향적인 경향이 있다고 여겨지는데(Zuckerman & Link, 1968), 감각추구 행동은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요인 중에 하나고,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이다(Arnett, 1992). Zuckerman(1974)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각추구 경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관된 연령간 충동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Achenbach & Edelbrock, 1981; Susman, Inoff-Germain, Nottelmann, Loriaux, Cutler, & Chrousos, 1987). 그러나 Zuckerman, Eysenck & Eysenck(1978)가 16세에서 70세 사이의 254명의 남성과 69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16세에서 19세 집단의 감각추구동기 수준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 충동성이 안정적이고 청소년기가 되어감에 따라 점점 충동성이 증가했다가 성인기에 들어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러한 감각추구 성향이 청소년기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Newcomb & McGee, 1991; 박윤창 외, 1995).

또 다른 요인으로 청소년기 충동성의 문제를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변동 때문에 아동이나 성인보다 더 극심하고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정서상태를 경험하는 것 같다고 본다(예를 들면, Larson & Lampman-Petratis, 1989). Larson, Csikszentmihalyi, 그리고 Graef(1980)가 19세에서 65세에 이르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실제로 좀 더 빠르고 극단적인 정서변화(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를 나타내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Larson과 Lampman-Petratis(1989)의 연구에서는 5학년과 9학년 학생들의 경우 정서상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상 청소년기 호르몬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호르몬과 청소년기의 정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Buchanan, Eccles, & Becker, 1992).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청소년기 정서 및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춘기 동안에 호르몬의 절대적인 증가치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변화 때문에 청소년기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Buchanan, et al., 1992). 호르몬의 변화가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은 부분 매개된다는 것이다(Brooks-Gunn & Reiter, 1990). 즉, 사춘기 때의 호르몬 변화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본다. 그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호르몬의 영향이 다른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의해서이다. 성숙한 판단은 정서가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준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청소년이 내리는 판단의 수준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서적 변동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일까? 정서가 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기분 좋은 상태는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행복한 사람은 좀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좀더 빨리 의사결정에 도달한다(Isen & Means, 1983). 둘째, 긍정적인 정서는 위험행동을 증가시키지만 위험이 비교적 낮은 한도 내에서도 위험의 수준이 중간에서 높은 정도인 경우에는 긍정적 정서가 사람을 좀더 조심성 있게 만든다(Isen & patrick, 1983; Isen & Geva, 1987). 그러나 의사결정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더 적다. 부정적인 정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더 싫어하게 만든다(Deldin & Levin, 1986; Pietromonaco & Rook, 1987). 정서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Janis, 1982), 스트레스 하에서 사람들은 심하게 경계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혼란스럽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청소년기 판단과 관련지어 생각해본다면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극단적인 정서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상의 변화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성인의 의사결정보다 덜 일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 사회적 발달특성의 세 번째 차원인 조망(perspectives)은 청소년들이 더 큰 그림들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주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장기적 결과와 단기적 결과를 모두 볼 줄 아는 능력(시간적 조망),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볼 줄 아는 능력(역할 습득 또는 조망 습득),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할 때 다른 것을 고려해서 할 줄 아는 능력(비용과 이익을 동시에 계산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망능력들이 모두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미래에 대해 덜 고려하며 의사결정의 장기적 결과보다는 단기적 결과에 더 중점을 둔다고 여겨지며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험부족과 관련시킨다. 성인에 비해 10년이나 20년 후에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조망이 성인과 다른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탈중심화(decentration)이다. 탈중심화는 초점을 문제의 중심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 중심은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 지금 처한 상황, 가장 명백한 이익과 손해 등의 문제가 된다. 판단의 성숙은 이러한 틀 내에서 의사결정 상황에서 탈중심화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덜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말이다. 청소년기 동안 탈중심화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청소년의 인지발달에 대한 Piaget의 모델은 추상적인 논리적 추론(형식적 조작)의 발달을 강조하고,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구체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로의 변화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동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형식적 조작적 사고의 발달은 청소년들이 가설적이고 연역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인지능력은 개인의 탈중심화 경향성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Foster와 Sprinthall(1992)의 연구에서 보면

추상적인 사고가 17-18세까지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17-8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탈중심화의 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판단이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자기중심성(Egocentrism)이다. 청소년기 탈중심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을 보면 주로 두 가지 가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는 청소년의 사고가 좀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청소년기 초기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현상이 “개인적 우화⁹⁾”와 “상상 속의 청중¹⁰⁾”이다. 이는 모두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감정은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점점 타인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Enright, Shukla, 그리고 Lapsley(1980)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우화와 상상 속의 청중은 청년 초기에 우세했다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조망획득이 좀 더 탈중심적으로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 중기와 후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개의 실증적인 연구만이 개인의 자아중심성 경향이 초기 청소년기에 최고조가 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Gray & Hudson, 1984; Riley,

Adams, & Neilsen, 1984), 청소년기가 성인기보다 더 자기중심적이라는 결과를 보인 연구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결과는 다소 불확실하다.

세 번째는 도덕발달의 측면에서 청소년기 조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Selman(1980)의 사회적 조망획득이론과 Kohlberg(1976)의 도덕발달이론 모두 청소년의 발달적 미숙을 언급하고 있다. 두 이론 모두 Piaget의 인지발달모델로부터 나온 것이다. 각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가정은 사회적 인지의 발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사려 깊게,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Selman의 이론에서 청소년기의 사회적 조망획득발달은 “상호적” 그리고 “사회적” 조망획득의 단계로 전이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호적 조망획득은 청소년이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사람의 사고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고 및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해준다. 의사결정 상황에서 조망획득의 수준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적 조망획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역시 성숙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가지는 조망이 매우 복잡하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따라서 어떤 결정에 직면한 충고에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은 사회적 조망의 수준에서, 그들 각각(그 청소년과 충고해주는 사람)이 다른 시각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시각과 자신의 역할간의 관계에 대해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 이해는 성숙한 판단이 관련되는 한 중요한 목적이 된다. 상호적 조망획득에서 연령과 관련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가 사회적 조망획득으

9) 개인적 우화란 자신의 경험은 독특하여 비록 부모라도 타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청소년은 자신의 정서 및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지각하지 못한다(Elkind, 1967).

10) 상상속의 청중이란 대부분의 생활장면에서 자신이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자아중심적 상상은 타인의 시선을 현실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Elkind, 1967).

로 가는 변화를 특징짓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런 종류의 조망획득을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 사회적 조망획득에 대한 연구에서 보여지는 결과의 형태는 자아발달에서 보여지는 것과 유사하다. 즉, 연령과 관련된 조망획득의 차이는 16세 이전에 나타나고 16세 이후의 조망획득의 변화는 개인차(예를 들면 지능이나 교육 등의)에 기인하는 것 같고, 발달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결국 16세 이전의 청소년의 경우 조망획득에서 성인과 차이가 나며 미성숙한 조망 때문에 미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한다.

같은 결론이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콜버그의 이론은 개인의 도덕적 발달이 질적으로 다른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전인습적(preconventional) 사고란 단순히 어떤 행위의 즉각적인 결과 측면에서 도덕판단을 하는 수준이고, 인습적(conventional) 사고는 행위의 여러 과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떻게 보이는가의 측면에서 추론하는 것이고, 후인습적(postconventional) 사고는 추상적인 도덕원리와 개인적인 양심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것을 말하는데,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하는 사람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압력에 덜 동조하고 좀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가 있다(Rest, 1983). 도덕발달은 논리적 추론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발달하는데, 청년기 후기나 성인초기보다 아동 및 초기 청소년기에는 도덕적 추론의 차이가 좀 더 놀랄만하게 나타난다. 아동기에는 대부분 추론이 전인습적이지만 청소년 중기에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인습적인 추론을 한다고 보았다. 후인습적 추론은 20세 이전에는 나타날 수 없고

전형적으로 매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 역시 청소년들이 아직 추상적인 도덕원리나 개인적인 양심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기에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함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숙한 판단과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조망의 또 다른 요소는 미래에 대한 조망이다. 미래에 대한 조망이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이것을 잘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단기적인 결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좀 더 성숙한 의사결정의 한 요인이 된다. 미래 조망과 관련된 실증 연구들을 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 사이에(예를 들면 11세에서 18세 사이) 미래지향성이 증가하고,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사이에(예를 들면 16세와 22세 사이) 증가한다고 한다(Green, 1986; Nurmi, 1991).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조망이 언제 급격히 발달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연구들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개인의 미래조망능력의 발달은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록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아동 및 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성인에 비해 뭔가 부족하고 아직 덜 완성된 존재로 보는 시각이 확연하다. 그러나 그런 시각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주는 연구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산출된 결과도 청소년의 미성숙 가정을 단언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 및 이론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런지를 확실히 결정 내릴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된다.

청소년 보호처분 청소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달적 미성숙 이외에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전환정책의 효과성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감옥에 보내지 않고 가능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처치를 받게끔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자라나지 않고 그들의 반사회적인 행동방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만일 전환정책을 통하여 청소년의 행동 상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청소년의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수형 및 전환정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수형이 청소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소년원의 구금생활이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들을 보면, 소년원생활이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유형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반사회적 행동유형을 학습하게 한다는 일관된 결과들이 있다(Furniss, 1964; Buehler et al., 1966; Duncan, 1974). 또한, 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달리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범죄인으로 개념화하게 하여 반복적인 범죄행위를 유발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는 청소년들이 범법을 했을 경우 비행청소년들이 형사기관, 법원, 그 밖의 처벌기관과 접촉할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환정책(diversion)이다. 전환정책은 청소년을 법적 절차에 따라 범법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하지 않고 적절한

개입(intervention)을 포함한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전환정책은 1960년대 이래로 소년 사법에서 매우 일반적이 되었다. 원래 초기의 전환정책은 청소년들이 공식적인 법적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획득하게 될 낙인효과와 잠재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소년사법제도와와의 접촉에 의해 붙는 비행소년이라는 낙인은 경찰에 의한 감시,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배제, 취직기회의 곤란이라는 부정적 효과에 귀결되어 소년의 사회복귀기회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낙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환처우로 구체화된 것이다(Binder외, 1988).

과연 전환정책은 재범 방지라는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연구는 전환정책의 수혜자들이 재범률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고(Baron & Feeney, 1976; Quay & Love, 1977; Bohnstedt, 1978; MetaMetrics, 1984; Pogrebin et al., 1984; Davison et al., 1990), 다른 연구는 오히려 재범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Lincoln, 1976; Brown et al., 1989), 또 다른 연구는 전환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Dunford et al., 1981; Rausch, 1983). 또한 전환정책에 대한 효과를 실험연구로 검증한 Davison 등(1987)의 연구결과 자기보고에 근거한 비행의 정도는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재범은 의미있게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고, Fox 등(1994)의 연구 역시 재범률이 낮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을 예로 들자면, 메사추세츠에서는 다섯 군데 청소년 교정훈련 학교의 문을 닫고 그것을 소규모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대체시켰다. 기본 이념은 수감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해로우며 그들이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와 처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안전한 구금을 필요로 하지 않

는 청소년들을 감옥이 아닌 그들의 집이나 이웃에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였다(Krisberg, Austin, Joe, & Steele, 1987; Macallair, 1993). 이렇게 한 결과 메사추세츠주의 범죄율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으며 메사추세츠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가장 낮은 청소년 범죄율을 지닌 주중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유타주도 훈련학교의 문을 닫고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12개월간의 추적기간동안 체포빈도가 66%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Krisberg et al., 1987). 또 다른 연구들 역시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에서 처치한 결과 훈련학교에 있었던 청소년들보다 재범율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 다른 예로 Klein (1974)에 따르면 1969년 LA의 경찰서에서 체포된 비행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선도한 경찰서 8군데와 가장 적게 선도한 경찰서 5군데를 선정하여 전환된 청소년의 재범율(선도된 후 2년 내)을 비교한 결과 초범자의 경우 전환정책을 많이 활용하는 경찰서의 관할구역에서 전환정책을 적게 활용하는 경찰서의 관할구역보다 더 낮은 재범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포 당시 이미 재범이었던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전환정책을 적게 활용하는 관할구역이 더 적은 재범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로부터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환정책은 초범자들에 대해서 재범방지효과를 가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다른 연구들을 보면(McCord, 1985) 장기적으로는 전환정책이 특별한 재범방지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는(Powers & Witmer, 1951; Klein, 1971; Werner & Smith, 1977; Cass & Thomas, 1979; McCord, 1982 등)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선도정책으로서 상담을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는

데, 그 이유는 상담프로그램에 투입된 비행청소년에게 오히려 문제아라는 낙인이 부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었다(Paternoster et al., 1979; Frazia & Cochran, 1986).

전환정책의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관계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청소년기가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경험하는 사건들이 청소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부정하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환정책에 대한 여러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의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환정책이 그렇게 큰 긍정적인 효과도 없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정책을 주장하는 입장은 전환정책을 포기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환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이지 전환정책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Gensheimer, Mayer, Gottschalk, & Davison II, 1989). Gensheimer 등(1989)은 전환정책의 내용을 보았을 때 4개월에 평균 15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을 뿐 청소년의 재범방지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주장하면서 적절한 개입(interven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법철학적 근거와 심리학적 근거, 그리고 교정가능성을 토대로 한 전환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쟁 때문이다. 다음에서 어떤 논쟁이 어떤 배경에서 제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청소년의 형사상 책임에 관한 논쟁들

청소년의 형사상 책임면제에 관한 논쟁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현재까지 세계 여러 국가 및 한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소년 사법체계에 근거한 입장으로 처벌보다는 처치(treatment)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매우 일반적인 입장으로 청소년들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또는 판단미숙으로 범죄를 범한다는 법철학적 근거와 일치한다(Fagan, 1990; Feld, 1992). 청소년은 제한된 판단능력에 기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책임도 역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져야하거나 또는 책임이 없다(Orlando & Crippen, 1992)는 것이다. 또한 사회는 모든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어린 아동들이 범죄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은 국가가 국친(parens patriae)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증거가 된다고 본다(Weisheit & Alexander, 1988). 이러한 발달적 견해에서 관심의 초점은 적절한 사법처리가 아니라 적절한 주의나 관심 및 보호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 처벌보다 처치를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법정과 성인법정을 구별할수록 범죄율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소년사법체계의 기본 철학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년사법체계가 청소년 비행의 억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는 다양하지만(Empsey, 1982), 공통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처

치 중심의 특징을 지닌 소년법정이 너무 관대해서 범죄를 억제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비행에 대한 재발적 접근이 비효과적이며(예를 들면, Lipton et al., 1975), 많은 비행이 반복적인 범법자들에 의해 자행된다(Wolfgang et al., 1972)고 주장한다. 청소년들 자신도 소년법정에서 받는 처벌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Glassner et al., 1983; Ruhland et al., 1982). 최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점점 이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법제도를 적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미국 청소년 사법센터(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는 10개 주에서 청소년들을 성인법정으로 용이하게 넘길 수 있도록 법률을 수정한 바 있고(Torbet, 1997), 1995년 캐나다에서도 특정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성인법정으로 전이시키는 법률을 만들었다(Section 16(1.01) of Young Offenders Act).

청소년의 취급에 있어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많은 여론적 지지를 받았다. 예를 들어 Spott(1998)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에게 전화로 걸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구별된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성인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한 사람들(n=938) 중 64%가 청소년들을 구별된 사법체계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 또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구별된 소년사법체계를 선호한 사람들은 71.7%가 소년법정에서 내려지는 선고가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반대한 사람들은 93.3%가 엄격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구별된 체계를 반대한 사람들의 72.9%는 청소년들도 성인만큼 엄격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소년사법체계를 찬성한 사람들은 52.1%였다)¹¹.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범죄행동을 할 때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 연령이나 인지적 발달과는 상관없이 책임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의 연령이나 이해의 수준 등의 정상참작을 제한적으로만 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처벌을 해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범죄적 해방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나타낸다. 또한 처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의 측면을 주장한다. 즉, 죄를 짓고도 일정한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경우 사회의 도덕적 기반에 손상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Morris, 1974; Wilson, 1975; van den Haag, 1975; Hirsh, 1976). 이 주장에 따르면 법 체계는 한 사회의 규범을 표현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규범이 파괴되었을 경우 법정은 사회의 정의감을 만족시키고 대중에게 도덕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정이 범법자의 최대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비행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법의 합법성 자체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본다. 잠재적인 범법자들은 범법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사회는 적절한 응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제도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될 것이며, 전통적인 청소년 사법체계가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Krisberg et al., 1986).

청소년 범법자에게 특별한 법을 실시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inger와 McDowall(1988)이 뉴욕주 청소년 범법자를 위한 법을 실시한 이후 과연 청소년 비행

이 줄어들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살인으로 체포된 빈도는 뉴욕주에서 변함이 없었고, 폭력행위로 체포된 비율을 오히려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범법자를 위한 특별법(Juvenile Offender Law)이 살인이나 폭력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뉴욕시의 13-14세 아동의 강간과 방화로 인한 체포율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 감소는 뉴욕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Philadelphia에서도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 범법자를 위한 법의 시행 이후 나타난 효과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결과들로 인하여 뉴욕의 청소년 범법자를 위한 법은 청소년들을 구별된 처치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인과 같은 형사법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¹².

12)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여론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미국의 "Three Strike and You're Out Law"일 것이다. "Three Strike and You're Out Law"는 1994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원래 기본 내용은 이전에 두 번 "폭력적인" 또는 "심각한"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세 번째 중죄로 유죄판결 받으면 25년 동안 강제로 투옥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같은 중죄(예를 들면, 살인, 방화, 강간, 무장강도, 유괴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미국의 복지 및 관례법 제707(b) 참고))를 저질렀을 경우 판결요건이 구성된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 중 4분의 3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감소시키고 죄의 금지효과 및 선택적인 무능력화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중죄-살인, 강간, 폭행 등-를 감소시킬 것이고, 범법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관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3 strikes" 법 시행 후 범죄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법의 효과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청소년을 기본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분류하는 이론적 배경과 배치되는 법으로, 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3 strikes" 법이 실제로 대부분의 폭력범죄를

11) 그러나 처벌에 대한 여론은 간단하지가 않았다. "12세에서 17세 된 범법소년을 성인과 같은 감옥에 함께 수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는 구별된 사법체제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82.6%가 따로 분리된 시설에 수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청소년의 특별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철학적 발달심리학적 근거와 현실적인 문제가 서로 부딪치게 됨에 따라 이 두 가지 상반된 접근의 상대적인 가치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가 워싱턴과 메사추세츠 주에서 실시된 바 있다. 1977년 워싱턴주에서 어떠한 범법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모든 범법자는 특정한 시간동안 교정시설에서 복역해야만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무장 강도나 살인과 같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종종 미미한 범죄나 지위비행을 저지른 소년들보다 더 짧은 기간동안 감옥에 있기도 했다는 보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법안은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행동의 심각성에 따라 좀 더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체계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Schneider & Schram, 1983; Macallair, 1993). 정책을 바꾼 후 평균 수감기간이 388일에서 265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감된 사람 중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1984년부터는 매년 수감기간이 증가하여 주의 시설의 100% 이상이 가득 차게 되었다(Macallair, 1993). 따라서 이 접근은 빈곤층 사람들의 관리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아마도 정책의 변화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재범감소와 새로운 범법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가의 문제였을 것이다. California의 12개 주에서 과연 이 법안의 시행 후 범죄율이 줄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범죄의 감소율이 별로 차이가 없었다(<http://www.cjci.org/jpi/strikingout.html>). Schneider(1984)의 보고에

서도 정책 변화 후 재범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몇몇 도시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책 변화 후 더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Castellano(1986)는 청소년 범법행위에 대해 옹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발달적 미성숙을 근거로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하는가의 문제와 전환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다. 연구의 결과들도 다양하고 또한 여론도 단순하지 않다. 한국의 사례로 서론에서 언급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1월 14일 SBS 뉴스추적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한 사례에서 초등학교들이 돈 1000원을 빼앗기 위해 이웃집 할머니를 폭행하여 뼈를 부러뜨리고 피부 밑 혈관이 모두 터지게 하였고, 두 번째 사례 역시 초등학교 세 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여아를 성폭행 하였으며, 또한 세 번째 사례에서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유치원생을 저수지에 밀어 살해한 후 옷을 모두 벗겨 신원확인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있었다. 세 경우 모두 단순한 아이들의 실수로 보기에 너무나 심각하고 잔인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아이들이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따라서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즉,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현실적 적용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아무리 흉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할지라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감소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세 번 범법 행위를 하여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소수민족 범법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수감된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감형을 내릴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인가? 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은 단순히 이론적 실험적 근거를 따를 수 없으며 또한 대중의 여론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될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 범법자의 특별지위에 대한 주제가 서로 상반되는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 수립과정에서 두 입장 모두를 합리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수렴시켜야 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의 미성숙성과 교정가능성을 가볍게 보아 충분히 변화 가능한 청소년의 미래를 회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대로 두었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응보에 대한 인식 없이 성인 범죄자로 자라날 가능성을 잘라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다루어 줄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실마리를 청소년 범죄에 대한 Moffitt의 발달이론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Moffitt(1993)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어떤 청소년들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그 시기만 지나면 비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자를 평생지속형(life course persistent)으로, 후자를 청소년기 제한형(adolescence limited)이라고 명명하였는데, 평생지속형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각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비행을 시기에 맞게 바꾸어 가면서 저지른다¹³. 이들은

인지적으로 결함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다루기가 어렵고 주의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학교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며 학습장애, 과잉활동장애, 품행장애 등과 겹쳐지고(Moffitt, 1990a), 주로 폭력과 관련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기 제한형은 비행행동을 갑작스럽게 시작하고 또한 갑작스럽게 그만둔다. 이들은 행동에 있어 상황적인 일관성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친구와 약물은 하면서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비밀관성을 보인다. 평생지속형은 주변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데 반해서 청소년기 제한형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동료 중 비행의 모델이 있는 경우 비행의 시작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두 유형은 저지르는 비행의 종류에서 서로 다른데, 청소년기 제한형은 주로 성인의 특권을 상징하거나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범죄에 관여하고(예를 들면, 기물파손, 약물남용, 가출, 절도 등), 평생지속형 범법자는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는데, 주로 폭력이나 사기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대인형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밝혀진 바 있다. Moffitt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기 제한형의 비행은 정신병리가 아니고 그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상 청소년 비행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집단은 지속적으로 재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집단, 즉, 평생지속형이다. 이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지속적으로 재범을 하다가 결국은 성인 범죄자로 성장하는 성장과정을 가지기 쉬운 집단으로, 결국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걱정 및 청소년의 특별지위인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은

13) 예를 들면 4세 때는 다른 아이들을 물고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10세가 되면 물건을 훔치거나 무단결석을 하고, 16세가 되면 마약을 팔고, 자동차 절도를 하고, 22세가 되면 강간을 저지르고 30

세 경이 되면 사기를 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등 표현양식이 계속 달라진다.

바로 평생 지속형 청소년들이 초점이 될 것이다.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고 낙인찍히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소년법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올바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면 청소년들에 대하여 특별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모든 청소년이 발달적으로 미숙하고 교정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매우 흉폭하고 가공할만한 증좌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단순히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특별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적정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Moffitt의 이론에 근거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일시형을 구분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범법소년들의 처분시 응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들에게는 전환 및 교정정책에 근거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진다면 처벌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행소년들을 단순히 심리적으로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일시형을 구분하여 구분된 바에 따라 평생지속형은 처벌을 하고 청소년기 일시형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것은 일단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일시형을 구분하는 효율적인 척도를 개발하여 두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처치 프로그램을 적정 기간 동안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런 후에도 범죄행동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 처벌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말이다. 즉, 처

벌 이전에 한 번의 과정을 더 두어 개선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척도개발 및 처치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밖의 관련 연구가 심도 깊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의 특별지위인정에 대한 법철학적 입장과 여론의 상충관계에서 심리학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경대수 (1999). 소년법 처리실무.
-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3-64.
- 유진식 (1982). 소년법 pp. 125. 육법사
- 이한교 (1987). 소년법 개정의 기본방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강원법학, 제 3권, 1987, p.120.
- Achenbach, T., & Edelbrock, C. (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1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 Adams, G., Gullotta, T., & Montemayor, R. (Eds.) (1992).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Newbury Park, CA: Sage.
- Alexander, C., Kim, Y., Ensminger, M., Johnson, K., Smith, B. J., & Dolan, L. (1990). A measure of risk taking for young adolesc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59-569.
-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A

-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91-409.
- Baron, R., & Feeney, F. (1976). *Juvenile diversion through family counseling*.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Bellotti v. Baird, 443 U. S. 622. (1979).
- Bender, L., & Curran, F. J. (1940).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kill. *Criminal psychopathology*, 1, 297-322.
- Bernard, T. J. (1992). *The Cycle of Juvenile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42-47.
- Berndt, T.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Binder, A., Geis G., & Bruce, D. (1988). *Juvenile Delinquency: Historical, Cultural, Leg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s Publishing Company), pp. 412-413.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hnstedt, (1978). Answers to three questions about diver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5, 109-123.
- Brittain, C. (1963). Adolescent choices and parent-peer cross-pressu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 385-391.
- Brooks-Gunn, J., & Reiter, E., (1990). The role of pubertal processes.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16-2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W. K., Miller, T. P., Jenkins, R. L., & Rhodes, W. A. (1989). The fallacy of radical non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3, 177-182.
- Buchanan, C., Eccles, J., & Becker, J. (1992). Are adolescents victims of raging hormones?: Evidence for activational effects of hormones on moods and behavior at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1, 62-107.
- Castellano, T. C. (1986). The justice model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ashington State's experience. *Law and Policy*, 8, 479-506.
- Coleman, J. C., & Hendry, L. (1990). *The nature of Adolescence*, 2nd ed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ulver, C. (1982). *Philosophy in medic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son, W. S., Render, R., Blakely, C. H., Mitchell, C. M., & Emshoff, J. G. (1987). Diversion of Juvenile Offenders: An Experimental Comparis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5, No. 1, 68-75.
- Davison, W. S. II, Render, R., Admur, R. L., & Mitchell, C. M. (1990). *Alternative treatment for troubled youth: The case of diversion from the justice system*. New York: Plenum.
- Deldin, P., & Levin, I. (1986). The effect of mood induction in a risky decision-making task. *Bulletin of the Psychometric Society*, 24, 4-6.
- Dunford, F. W., Osgood, D. W., & Weichselbaum, H. F. (1981). *National evaluation of diversion projects: Final report*.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 Easson, M. B. & Steinhilber. (1961). Murderous aggression by children and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27-35.
- Empey, L. T. (1982). *American Delinquency: Its Meaning*

- and Construction* (rev. ed.). Homewood, IL: Dorsey.
- Enright, R. D., Shukla, D. G., & Lapsley, D. K. (1980). Adolescent egocentrism-sociocentrism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2), 101-116.
- Eric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gan, J. A. (1990). Treatment and reintegration of violent juvenile offenders: Experimental results. *Justice Quarterly*, 7, 233-263.
- Feld, B. C. (1992). Criminalizing the juvenile Court: A research agenda for the 1990s. In I. M. Schwartz (Ed.), *Juvenile justice and public policy: Toward a national agenda*. New York: Lexington Books.
- Foster, V., & Sprinthall, N. (1992). Developmental profiles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choosing abortion: Stage sequence, décalage,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dolescence*, 27, 655-673.
- Fox, J. W., Minor, K. I., & Pelkey, W. L. The relationship between law-related education diversion and juvenile offenders' social and self-perception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19, 1, 61-77.
- Frazia, C. E., & Cochran, J. K. (1986). Official intervention, diversion from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dynamics of human services work: Effects of a reform goal based on labeling theory. *Crime and Delinquency*, 32, 157-176.
- Freud, A. (1958).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3, 255-278.
- Furby, L., & Beyth-Marom, R. (1990). *Risk taking in adolescence: A decision-making perspective*. Washington, DC: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Furby, M., & Beyth-Marom, R. (1992). Risk-taking in adolescence: A decision-making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1-44.
- Gensheimer, L. K., mayer, J. P., Gottschalk, R., & Davidson, W. S.(1989). Diverting Youth from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Efficacy. *Youth violence: program and prospects*. pp. 39-57.
- Gittler, J., Quigley-Rick, M., & Saks, M. (1990). *Adolescent health care decision making: The law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 Glassner, B., Ksander, M., & Berg, B. (1983). "A note on the Effect of Juvenile vs. Adults Jurisdiction." 31 *Social Problems* 219.
- Glover, E. (1960). *The Roots of Crim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ay, W., & Hudson, L. (1984). Formal operations and the imaginary aud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619-627.
- Greenberger, E. (1982). Education and the acquisition of psychosoci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329-358.
- Greene, A. (1986). Future-time perspective in adolescence: The present of things future revisite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99-113.
- Grisso, T. (1981). *Juveniles' waiver of rights: legal and psychological competence*. New York: Plenum press.
- Grisso, T., & Vierling, L. (1978). Minor's consent to treatm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rofessional Psychology*, 9, 412-427.
- Hirsh, A. von. (1976). *Doing Justice: The Choice of Punishments*. Report of Commission for the Study of Incarceration. New York: Hill and

- Wang.
- Isen, A., & Geva, N. (1987).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acceptable level of risk: The person with a large canoe has a large wor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9, 145-154.
- Isen, A., & Means, B. (1983).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decision making strategy. *Social Cognition*, 2, 18-31.
- Isen, A., & Patrick, R. (1983). The effect of positive feelings on risk taking: When the chips are dow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1, 194-202.
- Janis, I. (1982). Decision making under stress. In L. Goldberger & Bre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 69-80).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Junger-Tas, T., Terlouw, G. J., & Klein, M. (1994). *Delinquent Behavior among young people in the Western World*. Amsterdam: Kugler press.
- Kohlberg, L.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risberg, B., Austin, J., Joe, K., & Steele, P. (1987). *The impact of juvenile court sanctions*. San Francisco: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Krisberg, B., Schwartz, I. M., Litsky, P., & Austin, J. (1986). "The watershed of Juvenile Justice Reform," 32 *Crime and Delinquency* 5.
- Larson, R., & Lampman-Petratis, C. (1989). Daily emotional states as report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250-1260.
- Larson, R., Csikszentmihalyi, M., & Graef, R. (1980). Mood variability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469-490.
- Lexcen, F., & Reppucci, N. D. (in press). Effects of psychopathology on adolescent medical decision making.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Roundtable*, 5, 63-106.
- Lincoln, S. B. (1976). Juvenile referral and recidivism. In R. M. Carter & M. W. Klein (Eds.), *Back on the street: Diversion of juvenile offenders* (pp. 321-328).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ipton, D., Martinson, R., & Wilks, J. (1975).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Treatment*. New York: Praeger.
- Loevinger, J. (1976). *Ego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Lyon, J. (1996). Adolescents who offend. *Journal of Adolescence*, 19, 1-4.
- Macallair, D. (1993). Reaffirming rehabilitation in juvenile justice. *Youth and Society*, 25, 104-125.
- Mack, J. (1909) The juvenile court. *Harvard Law Review*, 23, 104-119.
- Marcia, J.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arkus, F. (1975). Detours on the road to maturity: A view of the legal conception of growing up and letting go.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39, 78-92.
- McCarthy, J. B. (1978). Narcissism and the self in homicidal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38, 19-29.
- Meisel, A., Roth, L., & Lidz, C. (1977). Toward a model of the legal doctrine on informed cons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

- 285-289.
- MetaMetrics, Inc. (1984). *Evaluation of the Breakthrough Foundation Youth at Risk Program: The ten-day course and follow-up program: Final Report*. Washington, DC: MetaMetrics.
- Moffitt, T.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Moffitt, T. E. (1990a). Juvenile delinquency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Developmental trajectories from age 3 to 15. *Child Development*, 61, 893-910.
- Morris, N. (1974). The future of imprisonment: Toward a punitive philosophy. *Michigan Law Review*, 72, 1161-1180.
- Muler, D., & Looney, J. C. (1974).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homicid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34, 187-198.
- Mulvey, E., & Aber, M. (1988). "Growing out" of delinquency: Development and desistance. In R. L. J. J. & W. Brown (Eds.), *The abandonment of delinquent behavior: Promoting the turnaround*. New York: Praeger.
- Murphy, J. (1979). Therapy and the problem of autonomous cons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 415-430.
- Newcomb, M. D., & McGee, L. (1991).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on general deviance and specific problem behavior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614-628.
- Nurcombe, B., & Partlett, D. (1994). *Child mental health and the law*. New York: Free Press.
- Nurmi, J. (1991). How do adolescents see their future?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future orientation and planning. *Developmental Review*, 11, 1-59.
- Parham v. J. R., 442 U. S. 584 (1979).
- Paternoster, R., Waldo, G. P., Chiricos, T. G., & Anderson, L. S. (1979). The stigma of diversion: Labeling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P. L. Brantingham & T. G. Blomberg (Eds.), *Courts and diversion: Policy and operations studies* (pp. 127-142). Beverly Hills, CA: Sage.
- Pietromonaco, P., & Rook, K. (1987). Decision style in depression: The contribution of perceived risks versus benef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99-408.
- Pogrebin, M. R., Poole, E. D., & Regoli, R. M. (1984). Constructing and implementing a model juvenile diversion program. *Youth and Society*, 15, 305-324.
- Quay, H. C., & Love, C. T. (1977). The effect of a juvenile diversion program on rearres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 377-396.
- Rausch, S. (1983). Court processing versus diversion of status offenders: A test of deterrence and labeling the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 39-54.
- Rest, J. (1983). Morality. In J. Flavell and E. Markma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II: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Wiley.
- Riley, T., Adams, G., & Neilsen, E. (1984). Adolescent egocentrism: The association among imaginary audience behavior, cognitive development, and parental support and reje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401-438.
- Ruhland, D. J., Gold, M., & Hekman, R. J. (1982). Detering Juvenile Crime: Age of Jurisdiction,"

- 13 *Youth and Society* 353.
- Satten, J., Menninger, K. A., Rosen, I., et al. (1960). Murder without apparent motive; a study in personality dis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7, 48-53.
- Schneider, A. L. (1984). Sentencing guidelines and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offenders. *Justice Quarterly*, 1, 107-128.
- Schneider, A. L., & Schram, D. (1983). *A comparison of intake and sentencing decision making under rehabilitation and justice models of the juvenile system: Vol. 5. An assessment of juvenile justice system reform in Washington State*. Institute of Policy Analysis.
- Scott, E., & Griss, T. (1997). The evolution of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juvenile justice reform.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8, 137-189.
- Scott, E., Reppucci, N. D., & Woolard, J. L. (1995). Evaluating adolescent decision making in legal contexts. *Law and Human Behavior*, 19, 221-244.
- Section 16(1.01) of Young Offenders Act).
- Seidman, E. (1984). The adolescent passage and entry in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N. D. Reppucci, L. A. Weithron, E. P. Mulvey, & Monahan (Eds.), *Children, mental health and the law* (pp. 233-255). Beverly Hills, CA: Sage.
- Selman, R.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inger, S. I. & Mcdowall, D. (1988). Criminalizing Delinquency: The Deterrent Effects of the New York Juvenile Offender Law. *Law and Society Review*, Vol 22, No. 3, 521-535.
- Sorrentino, J. N., & Olsen, G. K. (1977). Certification of juveniles to adult court. *Pepperdine Law Review*, 4:3:497-552
- Spott, J. B. (1998). Understanding Public Opposition to a Separate Youth Justice System. *Crime & Delinquency*, Vol, 44. No. 3, July 1998, 399-411.
- Stanford v. Kentucky 492 U. S. 361 (1989).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berg, L., & Silverberg, S.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53-569.
- Steinberg, L., & Cauffman, E. (1996). Maturity of judgement in adolescence; psychological factors in adolescent decision making. *Law and Human Behavior*, 20, 249-272.
- Susman, E., Inoff-Germain, G., Nottelmann, E., Loriaux, D., Cutler, G., & Chrousos, G. (1987). Hormones, emotional dispositions, and aggressive attributes in you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8, 1114-1134.
- Thompson v. Oklahoma, 487 U. S. 815 (1988).
- van den Haag, E. (1975). *Punishing Criminals*. New York: Basic Books.
- Vito, G. F. & Wilson, D. G.(1985). *The American Juvenile Justice System*, pp.18-19.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Wadlington, W. (1983).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for minors: The legal framework. In G. Melton, G. Koocher, & M. Saks (Eds.), *Children's competence to consent* (pp. 57-74). New

- York: Plenum Press.
- Wallace-Brosious, J., Serafica, F., & Osipow, S. (199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Relationships to self-concept and identity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127-149.
- Weisheit, J. R., & Alexander, D. (1988). Juvenile justice philosophy and the demise of parens patriae. *Federal probation*, 41, 56-63.
- Wilson, J. Q. (1975). *Thinking about Crime*. New York: Basic Books.
- Wolfgang, M. E., Figlio, R. M., & Seliin, T. (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uckerman, M. (1974). The sensation-seeking motive. In B.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7). New York: Academic Press.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J.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Zuckerman, M., & Link, K. (1968). Construct validity for the sensation-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420-426.
- Zuckerman, M., Eysenck, S., & Eysenc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 139-149.

1 차원고접수일 : 2002. 9.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2. 3

최종게재결정일 : 2002. 12. 6

Psychological analysis of diversion policy for juvenile offenders

Kye-Min Yang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This article provides a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diversion policy, which gives a special status to juvenile offenders under the umbrella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as created on the premise that juvenile offenders do not fully grasp the nature and consequence of their actions, that they are much more amenable to rehabilitation, and henc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ocuses on rehabilitation of juvenile offenders than punishment. In recent years, with the increased violence, incidence, and severity of the crimes committed by juvenile offenders and the age in which violent crimes are being committed by adolescents steadily decreasing, many have questioned the validity of the assumption and viability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e critics charge that the arbitrary age definition of a juvenile is no longer tenable since children mature much more quick and the violent nature of their crimes suggests that they may not be amenable to rehabilitation. Review of the existing legal and psychological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previous assumption that juvenile offenders cannot fully grasp the nature and consequence of their action is not fully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The current literature fails to provide conclusive evidence that juveniles are cognitively and socially immature and they are u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sequence of their actions. The outcome of the conversion policy that focused on rehabilitation of juvenile offenders is inconsistent, show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sults. With the mixed results, it is important to re-examine the fundamental premise and viability of the present juvenile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policy based on theoretically grounded, conceptually valid, and empirically supported research. Implications of the developing a rational and scientifically grounded legal system for adolescents that takes into account psychological research will be discussed.

Key Words : Juvenile justice system, diversion policy, adolescents crime